

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 문의사항

박민영 관세사 T/02-6011-3033 메일/ mypark@esein.co.kr 박성희 차장 T/02-6011-3053 메일 / shpark@esein.co.kr

2018.03.27

'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----- 특례법 시행규칙' 일부 개정 안내

1. 개요

'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'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주요사항

◇ 개정이유

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조정하려는 것임.

◇ 개정내용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[기획재정부령 제661호, 2018.3.19]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"연 1천분의 16"을 "연 1천분의 18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현재	개정안
연 1천분의 16	연 1천분의 18



세인 소식지

2018.03.27

문의사항

권선아관세사 T/ 054-471-2083 메일/ sakwon @esein.co.kr

[서울세관] 『수입세액 정산제도』 협의회 개최

서울본부세관(세관장 윤이근)은 지난 22일 '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' 시행 2년차를 맞아 정산업체 및 확인관세사를 초청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날 협의회에서 서울세관은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 간소화 등 전년도 정산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정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한편, 관세청은 정산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7년에는 10개 社를 선정하였으며, 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기존 10 개 社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20개 社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. 관세청은 향후 심사인력 증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업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.

[서울세관]『FTA인증상담센터』운영

서울세관은 신규(연장) 업체별·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작성방법 등을 상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FTA인증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.

- [운영] 주 5회(월~금)
- [장소]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 4과『인증상당센터』
- [대상] 신규(연장)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,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작성 등 상담을 받고자 하는 업체
- [신청방법]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> 뉴스/소식 > FTA인증 상담센터 메뉴에서 신청
- [문의] 자유무역협정4과 fta010@customs.go.kr